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7일, 박홍배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9.)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배의원)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2020.3.24.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 제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5(과징금) ① (생 략)	제48조의5(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대집행) ① ~ ④ (생 략)	제49조(대집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⑥ --------- 제5항--------

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폐기물관리법」제49조[1]는 폐기물 처리명령 등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기관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6조[2]를 근거로 「국세징수법」의 예[3]에 따라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른 불법폐기물 대집행비용의 구상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개년동안 총 131건에 대하여 1,325억 3,700만원 규모의 대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구상금액은 21건(16%)에 대한 21억 7,600만원(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1)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시 강제징수 종류]**

제도명	내 용
독촉(제10조)	지정납부기한 후 10일 이내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 발부
압류(제31조)	징수에 필요한 재산 범위에서 압류* *부동산, 동산·유가증권, 채권 등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 초과압류 가능
압류재산의 매각 (제64조)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조치이행* *[1안]수의계약 매각의사 체납자등 통지, [2안]공매공고, [3안]캠코에 매각대행 의뢰
청산 (제94조)	압류한 금전, 매각대금 등을 압류재산 관련 체납액 등에 배분

[연도별 불법폐기물 대집행비용 구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대집행 건수	대집행금액			구상건수 (비율)	구상금액 (비율)
		계	국고	지방비		
2019년	85	67,120	29,770	37,350	17(20.0%)	1,965(2.9%)
2020년	30	42,193	35,348	6,845	4(13.3%)	211(0.5%)
2021년	6	9,277	7,368	1,909	-	-
2022년	7	8,797	5,019	3,778	-	-
2023년	3	5,150	2,817	2,333	-	-
계	131	132,537	80,322	52,215	21(16.0%)	2,176(1.6%)

자료: 환경부

대집행비용 구상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방치폐기물이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등을 발생시킨 자가 대집행비용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나, 현행법은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적용할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고 함)에 따른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은 대집행 구상비용 체납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이나, ① 대집행비용 구상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②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제재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적절한 수준의 제재 조치라 보임.

참고로, 체납액 제재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체납액 제재 규정 비교]

국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체납자료 제공)**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종합)한국신용정보원, (개별)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또는 3회/년 이상 체납시 ○ **(재산조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사용 가능 ○ **(사업허가등 제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의 신규허가 등 제한 요구 가능 ○ **(출국금지 요청)**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 확보 곤란 및 강제징수 회피 우려시 출국금지 요청 ○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가능	○ **(과세정보 등 요구·이용)** 체납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지방세 과세·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를 요구하거나 이용 가능 ○ **(체납 등 자료제공)** 지자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등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자료 요구시 자료 제공 가능 * (종합)한국신용정보원, (개별)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또는 3회/년 이상 체납자 ○ **(대금지급 정지)** 1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체납자에 지급할 대금 중 체납액 상당금액의 지급 정지 ○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가 그 체납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시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주무관청이 다를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요구 ○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가능* * 체납정보 공개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1천만원~3천만원), 명단공개 대상자에 소명기회 제공하며, 명단 등은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 ○ **(징수촉탁)** 납부할 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 그 소재지 징수공무원에 징수 촉탁 가능

한편, 그 외 개정 사항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4]하여 인용법 제명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

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3.24.)
- (주요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징수·관리 등을 위해 운용 중인 법률로 종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명 변경